

울산지방법원 2023. 5. 17 선고 2022가단1335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4. 19.

판 결 선 고 2023. 5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5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. 4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, 갑 제1, 2호증의 각 1, 2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

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, 원고가 2010.경 C에게 1억 5,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여, 2015. 8. 18.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9574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2015. 11. 27. ‘C는 원고에게 1억 5,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받아, 위 판결이 2015. 12. 19. 확정된 사실, 또한 C는 2014.경 위 대여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다가 구속되었는데, 그러한 상태에서 C의 처인 피고가 2015. 4. 20. 원고에게 ‘피고는 남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원금 1억 5,000만 원을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’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가 2015. 4. 20. 원고에게 1억 5,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(따라서, ‘위 각서는 C의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C가 출소하여 돈을 갚으라는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이다’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),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,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. 4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는, 원고가 이미 C에 대한 판결을 받아두었음에도 또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,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청구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.

3.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, 받아들인다.

판사 이준영